



DDP 디자인 라이브러리 콘텐츠 구축을 위한 서울디자인재단과 디자인하우스 업무협력 양해각서

주식회사 디자인하우스(이하 “디자인하우스”)와 서울시 산하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이하 “DDP”) 디자인 전문 도서관 콘텐츠 구축 관련하여 상호 업무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업무협약은 양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DDP 디자인 도서관 콘텐츠 구축 및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 업무) “디자인하우스”와 “재단”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에 입각해 아래와 같은 사항에 협력한다.

가. 디자인하우스는 DDP 디자인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 디자인 간행물 파월호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한다.

나. 재단은 지원받은 간행물을 효과적으로 전시, 보관 하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디자인 문화 확산에 힘쓴다.

제3조(협조) 양 기관은 사업을 수행할 실무자회의를 구성하고 본 협약과 관련한 공통의 목적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최대한 협조한다.

제4조(비밀의 준수) 양 기관은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비밀유지의 의무는 본 양해각서 효력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그 위반 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요청 등 정당한 행정 절차에 따른 정보 전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효력)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8년 DDP 디자인 도서관 설립 후 1년으로 한다. 다만, 본 협약의 효력에 대하여는 상호협의로 유지, 연장, 해지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해지 및 배상 책임)

- 가. 상대방이 본 협약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 본 협약을 중도에 해지코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디자인하우스’와 ‘재단’은 별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제7조(기타)

- 가. 본 양해각서의 내용은 양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아니한다.
- 나. 본 양해각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본 양해각서와 관련한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양 당사자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8조(보관) 본 업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12월

대표이사 이 근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영 혜
디자인하우스